

2021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1. 일 시 : 2021년 8월 3일(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박수원, 이경훈, 김태훈, 조하연, 김민수, 고민석 (9명)

■ 불참의원 : 신상진, 서원빈 (2명)

4. 안 건

가. 규정 제정/개정(안)

안 건		비고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심의
2.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개정(안)	
3.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개정(안)	
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5.	교과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6.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7.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8.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9.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안)	
10.	직제 규정 개정(안)	
11.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12.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13.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14.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위원장이 성원 확인 후(총원 11명 중 9명 참석) 개회를 선언하다.

【규정 개정】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응용학과(박사과정) 신설
-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글로벌인문융합경영학과(석사과정) 신설
-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실감융합콘텐츠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 스마트융합대학원 신규학과(바이오헬스융합학과) 및 2개 전공 신설
- 스마트융합대학원 신규학과(메타융합콘텐츠학과) 신설
- 교육대학원 외국인 정원외 과정 신설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
- 학기 및 수업에 관한 규정 개정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변경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2022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 박수원 의원은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응용학박사의 학위 명칭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학위 명칭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이건영 의원은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응용학박사의 학위 명칭과 관련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논의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묻고 체계적인 규정 정립의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대학원 통합학칙에 교육대학원의 내용만을 규정화하는 것은 타대학원과의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 조하연 의원은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응용학박사의 학위 명칭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용어의 제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민수 의원은 기업 채용시 실제 적용 경우를 설명하며 학위 명칭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범용적인 명칭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은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응용학박사의 학위 명칭과 관련하여 박수원 의원의 보편적인 학위명칭 정립 의견에 동의하며 학생들의 의견 수렴절차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6조(수업연한)과 관련하여 규정 취지는 이해하나 내국인과의 차별 규정임을 지적하며 의견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은 제6조(수업연한)과 관련하여 차별성 조항에 의해 위헌성 여부를 내포하고 있어 내부규정에 위임하는 형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응용학박사의 학위 명칭은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 제6조(수업연한) ③항 규정은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③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정원외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기간은 교육대학원 학사운영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제9조 신설
- 김진곤 의장과 박수원 의원은 표현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제9조(회피·배제)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피 및 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3)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설
- 박수원 의원은 조기수료 신청취소 절차는 신청절차와 달리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서술하는 것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5조(신청취소) 조기수료 신청의 취소 희망자는 조기수료 신청 학기의 기말고사 시행 일 이전까지 조기수료 취소신청서를 작성, 주임 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학칙 제63조(졸업학점) 개정
 - 학칙 제64조(졸업논문) ①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 학칙 제65조(학위수여) 1호 개정
- 박수원 의원은 제63조(졸업학점)의 단서조항 신설에서 단서조항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단서조항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이에 교육지원팀장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에 다른 해당 규정 내용의 반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천성오 부의장은 이전 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정된 '원격수업 운영 규정'의 내용으로 중의적 해석 가능성은 없다고 부연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64조(졸업논문) ③항 졸업논문 대체방법의 서술은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의 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 박수원 의원은 표현의 체계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③ 졸업논문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정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다.

1. 특별 실험실습 보고서
2. 종합설계 결과물
3. 졸업종합시험
4. 전공 관련 자격증
5. 공모전 결과물
6. 기타 학부 또는 학과가 정하는 방법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5) 교과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①항 2, 4, 6호 개정
-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②항 4호 개정

▪ 이건영 의원은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제①항 6호의 '관련 위원회'가 무엇인지를 묻고 이에 교육지원팀장은 교과과정 심의위원회라고 답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6)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5조(이수학점) [별표1] 개정

▪ 박수원 의원은 연계전공과 연계융합전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고 정립과 규정에 명확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7)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3조(개설) ②항 개정
- 제4조(교과과정 편성) ②항, ③항 개정
- 제5조(운영위원회) 삭제
- 제6조(운영 및 관리) ③항, ⑤항 개정

- 박수원 의원은 연계전공과 연계융합전공 차이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재차 의견제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8)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2조(위원회 구성) ①항 개정
- 제5조(기능) 5호 개정 및 7호 신설
- 제6조(분과) 문구수정 및 5호 개정
- 제8조(사무관장) 및 제9조(간사) 개정

- 이건영 의원은 제2조(위원회 구성)의 교육지원팀장의 당연직 위원화 규정 신설의 적절성에 대해 묻다.

- 이에 김태훈 의원은 상위 규정인 '제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 개정이며, 노사협약에 따른 개정 배경을 부연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부연 설명하고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9)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안)

- 산학협력단장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학생연구자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제정

- 김진곤 의장을 포함한 박민수 의원, 박수원 의원, 이건영 의원은 제11조(학생 인건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규정 취지, 확정적 금액 규정의 이유, 사기업과의 상충 문제, 적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수정여부에 대해서 묻고 이에 산학협력단장은 확정적 금액 규정의 사유와 향후 개정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과 박수원 의원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명칭이 학생연구자 처우에 관한 규정을 예를 들며 규정 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산학협력단장은 향후 타 대학 제정 사례를 분석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이건영 의원은 기존 '연구비관리 규정'의 관련 내용과 연동하여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산학협력단장은 제정 이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상호 정립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답변하다.

- 이건영 의원은 제1조(목적)에 규정의 제정 근거를 추가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1) 직제 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과 기획평가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조직 신설에 따른 직제 규정 반영

▪ 김태훈 의원은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개요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기획처장은 사업의 개요, 참여 대학, 사업 금액, 사업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 김태훈 의원은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의 운영팀장 겸직과 관련하여 겸직 지양의 원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획처장은 사업 초기 1학기 정도의 한정적 팀장 겸직체제로 운영할 것임을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을 포함한 박민수 의원, 박수원 의원, 이건영 의원은 현행 직제 규정은 빈번한 신설, 삭제로 규정의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폐지 후 전면 개정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 및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을 신설하여 교육 강화

- 인쇄실 운영 업무 삭제

- 급여지급 업무(급여 및 강사료 지급 업무, 연말정산 업무, 급여관련 증명서 발급 업무, 그 외 급여지급 관련 업무) 추가

▪ 이건영 의원은 제16조(총무팀) 9호 급여지급 업무 이관 개정 사유와 관련하여 명확한 서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정 사유에 대해 묻고 이에 총무팀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상호 관련성 측면이라고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와 인력이 함께 이전되는지에 대해 묻고 인력운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박수원 의원은 급여 업무의 중요성과 신입 직원에게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 유경험자에게 업무분장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태훈 의원은 제16조(총무팀) 9호 급여지급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직원 총원이 검토되고 있는지 묻다. 재무팀에서 1명이 수행한 업무

를 총무팀으로 이관하면서 총원이 없다면 총무팀 직원의 업무 로드가 심해질 것임을 지적하였고 또한 제17조(재무팀) 3호 세무회계 업무의 범위에 대해 묻고 이에 총무팀장은 모든 지출에 대한 세무 업무라고 설명하다.

▪ 의원 전원은 총무처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업무의 추가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총원 또는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전기기사 1급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 규정 반영

- 직무수당 부칙 변경

▪ 의원 전원은 제41조의 3(기술수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술수당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적용 대상자의 비차별적 규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제41조의 3(기술수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술수당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규정화를 위해 추가 검토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며 부결하다.

14)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가점평정대상에 참빛모범상 추가(제20조 ①항 3호 개정)

▪ 의원 전원은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다.

제20조(가.감점평정) ① 직원이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대통령의 포상·표창 : 3점

2.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사장의 포상·표창 : 2점

3. 총장명의로의 포상·표창

가. 참빛모범상, 행정봉사상 : 3점

나. 공로상 : 2점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5)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임용절차 및 시기 규정 중 임명장 관련 내용 삭제

▪ 제17조(임용시기) ②항 단서 조항인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 면직된 것으로 한다” 부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타 규정에서의 임용 개념과 통일성 및 입법취지상 “한다”를 “본다”로 적절히 표현하여 수정하여 유지하는 것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17조(임용시기) ②항 단서 조항인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 면직된 것으로 본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기타 의결 사항】

▪ 회의 녹취록과 관련하여 보존 및 유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람 1주일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 전원은 동의하고 의결하다.

6. 폐회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8월 3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김 진 곤	(서명)
부 의 장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이 건 영	(서명)
평 의 원	박 수 원	(서명)
평 의 원	이 경 훈	(서명)
평 의 원	신 상 진	(서명)
평 의 원	김 태 훈	(서명)
평 의 원	서 원 빈	(서명)
평 의 원	조 하 연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